
2022-2023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연수 협력기관 입찰 제안요청서

2022. 1.



재외동포재단

- 목 차 -

1. 사업개요	1
2. 용역개요	2
3. 제안 요구사항	4
가. 제안서 작성 시 필수사항	4
나. 사업비 편성	7
4. 협력기관 선정방식	8
5. 입찰신청서 접수	12
<붙임1> 협력기관 신청서	13
<붙임2> 세부시행계획서	14
<붙임3> 프로그램 및 예산집행 계획서	16
<붙임4> 재외동포청소년교류사업 제안서 심사기준표	18
<붙임5-1> 관련사업 수행실적	19
<붙임5-2> 사업실적 증명서	20
<붙임6> 공동수급표준협정서	21

1 사업 개요

- 사업명 : 2022-23 재외동포대학생모국연수(온/오프라인)
 - 영문명 : OKFriends Homecoming/Cyber Youth Camp
- 주 최 : 재외동포재단
- 연수기간
 - 오프라인
 - 2022.7.20.(수)~27(수) <7박8일>, 2022.8.3.(수)~10(수) <7박8일>
 - 2023.7.19.(수)~26(수) <7박8일>, 2023.8.2.(수)~9(수) <7박8일>
 - 온라인 : 계약기간내 상시(※향후 재단과 협의하여 기간을 정함)
- 연수대상 : 재외동포 및 국내 대학생 (만18세~24세)
- 연수인원
 - 오프라인
 - 2022년 국외 400명, 국내 100명, 2023년 국외 400명, 국내 100명
 - 온라인
 - 2022년 국외 500명, 국내 500명, 2023년 국외 500명, 국내 500명
- 참가자 지원 내용
 - 국내 체류비 및 연수비 100% 지원
 - 참가자 전원 항공료 50% 지원(일반석 기준)
 - 지역별 경제 수준, 개인의 특수 상황을 고려하여 공관장이 추천 및 건의할 경우 지원 검토
 - 지역 특성 및 동포 사정에 따라 일부 지역 항공비 차등 지원
 - ① 멕시코·쿠비 한인 후손, 입양인 자녀 : 왕복 항공비 100% 지원
 - ② ‘21년도 오프라인연수 수료자 인센티브 : 항공비 10%~20%추가 지원
- 연수 주요내용(온라인/오프라인 동일)
 - 차세대 한민족 자긍심 및 정체성 함양 교육(교육 및 체험)
 - 한국어 및 한국역사, 문화이해교육, 체험, 탐방

- 자랑스런 세계한인 핵심가치 증진교육(교육 및 토론)
 - 세계한인-시민의식 증진교육, 다문화-다양성-인권교육, 지속가능 발전목표(SDGs) 교육, 환경, 통일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토론
- 공공외교프로그램(교류 및 친화)
 - 국내 대학생, 차세대 리더와의 교류, 자원봉사활동
 - 청년 참여형 가치공공외교활동, K-컬처 청년 문화공공외교활동
 - 재외동포 청년과 함께하는 글로벌캠페인 공공외교활동(해외파견)

2 용역 개요

- 용역명 : 2022-23 재외동포대학생모국연수(온/오프라인) 기획 및 운영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결과보고서 최종 확인 후까지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3. 12. 31. (약 2년)
 - 계약형태 : 협상에의한계약
 - ※ 참고사항: 계약 체결 시,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신청 및 운영을 위한 컨소시엄 협약 필요
 - 용역예산 : 총 4,680,000,000원(금 사십육억팔천만원)(VAT 포함)
 - '22년 : 2,340,000,000원(금 이십삼억사천만원)
 - '23년 : 2,340,000,000원(금 이십삼억사천만원)
 - ※ 협력기관 매칭펀드 별도
 - 대금지급방법
 - 선 금 : 연도별 총액의 60%(계약체결 후 사업 시행 이전 공문 청구 시)
 - 잔 금 : 연도별 총액의 40%(연도별 사업 종료 후 공문 청구 시)
 - ※ '22년도 사업비 정산을 위해 '22년도 사업 종료 후 '22년도 용역비 내 선금을 제외한 금액을 사업 종료 후 공문 요청 시 중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 ※ '23년도 사업 시행 전 사업 진행 경비의 과다 발생 및 즉시 집행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숙박비 등) 재단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집행내역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수정계약을 할 수 있다.
 - ※ 대금지급방법은 재단과 위탁업체의 상호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업무범위

1) 재외동포재단

- 사업계획 및 방향 설정, 기획 총괄
- 참가자 선발(모집공고, 참가자 접수 및 선정, 통보) 등

2) 협력기관

- 참가자 모집, 홍보(국내, 해외)
 - 연수 운영 세부 계획 수립 및 시행(온라인, 오프라인)
 - 프로그램 구성·운영, 세부일정 수립, 참가자 관리(입·출국 안내 및 송·출영, 숙박 및 식사, 안전관리 등), 해외파견 등
 - 행사장 준비 및 행사 진행, 초청인사 수행
 - 청소년수련활동 인증 등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의 협력
 - 사업성과 및 사업평가 관리를 위한 외부전문가 자문단 운영
 - 사업 홍보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방송, 콘텐츠 제작 등)
 - 예산집행(여행자보험 가입, 회계감사 포함 등), 결과보고서 제출 등
 - 재외동포교육문화센터 건립 관련 시범사업 수행
- ※시범사업 관련 사항은 재단과 추후 협의하여 진행

3) 협력기관 준수사항

- 협력기관은 본 연수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변동사항 발생 시 협력기관은 즉시 재외동포재단에 알리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협력기관이 책임진다.
- 협력기관은 계약체결 후 전체 또는 부문별 사업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본 사업을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한다.
- 협력기관은 수행과정 중 발생한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를 처리한다.
- 협력기관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지 아니한다.
- 협력기관은 사업일정, 진행현황 및 계획 등은 중간보고 하되 협의에 따라 수시로 재단과 협의 또는 보고한다.

-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 제안 요구사항

가. 제안서 작성 시 필수 사항

① 일반 사항

- 제안서 양식 : 붙임2. 참조
- 분량 : 제한 없음
- “2022-2023 재외동포대학생모국연수(온/오프라인)” 진행과 관련, 제출된 제안서에 의거하여 참여기관은 기한 내에 안내사항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제출해야 함
 - 온라인, 오프라인(연수, 공공외교단) 계획 별도 작성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지속 등 오프라인 실시가 어려운 상황에 대비한 계획 제출해야함
- 다년계약(2년)에 따른 사업 만족도 관리, 사후관리 등 중장기 계획 제출
 - 참가자 DB 관리, 사업 종료 후 커뮤니티 관리 등
- 향후 지속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사업 성과지표 관리 계획 작성, 제출
 - 동 사업에 대하여 재단이 측정하는 지표 및 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 선정하여 추가 제시 가능
 - 성과 달성을 위한 협력기관 차원의 구체적인 방안 서술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방식	지표성격
한민족정체성교육 지식확산도	00.00점 이상	신규지표 50점	지식확산활동수혜자수/연수참가자수 X 100	계량(1)
참가자 의식/이해 개선도	00.00% 이상	신규지표 5%	세계시민의식, 한민족정체성 등 사전/사후 설문을 통한 개선도 실적 ※다면평가 설문 5점척도 시용	계량(2)
안전관리실태	00.00점 이상	신규지표 80점	1. 청소년수련활동인증 평가(50%) ※패스 100점, 보류 50점, 실패 0점 2. 연수참가자 환산재해율(25%) (사망자X5 + 부상자X1)/ 연수참가자수X100 3. 온라인연수 운영사고율(25%) 사고건수/연수참가자수X100	계량(3)

성과지표	목표치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방식	지표성격
파트너기관 협업확산 및 외부재원유지 실적	00.00% 이상	신규지표 5%	1. 파트너기관 수 증가율(50%) 2. 외부재원유치액 증가율(50%)	계량(4)
참가자 만족도	00.00점 이상	과거 3년 표준편차 93	설문을 통한 프로그램 참가 만족도	계량(5)
협력기관제시			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 추가 제시	

※목표치적절성, 설문조사항목 등 세부사항은 추후 재단과 협의하여 진행함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신청 및 운영 계획 제출**
- **사업관리계획 및 외부전문가 자문단 운영계획 제출**
 - 협력기관 모니터링 및 평가 담당자 지정
 - 모니터링 및 평가방법, 전문가 자문단 운영계획
 - 사후관리 방안(사업종료 3개월 이내, 3개월 이후 등), 사업홍보계획
- ※외부전문가 자문단 운영 관련 사항은 재단과 추후하여 진행함
- 안전매뉴얼 제작 및 매뉴얼에 따른 사업 진행 계획 제출
 - 문제발생시 대응계획(온/오프라인)
- ※스태프 및 봉사자 사전 안전교육, 사업 진행 중 안전사고 대응 방안 포함
- 연도별 사업 테마에 맞는 퍼포먼스 또는 캠페인을 포함한 홍보 계획 제출
- 오프라인 연수 운영 및 참가자 관리를 위한 세부계획(오리엔테이션, 공항 송출영, 조기 입국 및 지연 귀국자 관리, 여행자 보험 가입 등)
- 세부 인력 투입(운영) 계획 제출
 - **필수 인력 구성(4명)**
 - 사업관리자(총괄PM) 1명, 사업실무자 3명(오프라인연수 총괄 1명, 온라인연수 총괄 1명, 공공외교활동 총괄 1명) 필수 참여인력 정보 명시 필수
 - ※필수인력은 기관소속 **정규직원**이어야 하며, 해당자의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별첨 제출 필수
 - 업무별 인력 투입 계획(업무별로 구체 인원수 명시 필요)
- 운영 요원(자원봉사, 스태프 등) 모집, 선발, 지도 관리 계획
 - ※ 재단 'OKFriends 봉사단' 교육 및 훈련, 활용 사항은 재단과 추후 협의하여 진행

- 진로개발, 멘토십, 한국어, 역사 교육 관련 프로그램 제출
- 재외동포 또는 청소년 관련 사업 기획 및 운영 실적 제출

② 대학생 특화 프로그램 기획

- 참여형 가치공공외교활동, 문화공공외교활동 기획
- 시의성 있는 글로벌 이슈를 테마로 선정, 토론 또는 발표 등 참가자 참여형 프로그램 기획
 - 세계시민의식, 글로벌코리안, 환경, 평화, 통일 등을 주제로 선정
- 국내 대학생 및 국내 차세대 리더들과의 네트워킹프로그램 기획
- 세계한인-세계시민의식 증진 프로그램 기획
- 정체성 함양을 위한 한국역사, 전통문화 이해교육, 체험 프로그램
- 다문화-다양성-인권교육 프로그램 기획
- 연수 주제 및 프로그램 구성 비율

사업명	테마	비율(%)			
		강의·토론	체험	특별활동	계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연수 OKFriends Home- comingCyber Youth Camp	“과거, 현재, 미래의 대한민국, 그리고 재외동포 청년” (세계시민, 세계한인) ※2022년 한국 이민 120주년	30	50	20	100

- 프로그램 구성 내용 및 유의점
 - 오프라인

구분	내용	유의점
강의·토론	○ 한국 역사·문화, 정체성, 리더십, 환경, 한국인, 지구시민의식 등	○ 언어소통을 위한 통역 등 배치 (동시통역 포함) ○ 단순 강의 외 토론, 컨퍼런스, 포럼 등 다양한 형식 기획
체험	○ 박물관, 독립기념관, 역사유적지 등 ○ 민속촌, 시장, 한국대표 산업시설(IT, 자동차, 조선, 제철 등) 시설, 국회 등 ○ 국내 대학생·차세대 교류, 참여형 가치공공외교활동, 문화공공외교활동 등	○ 세부운영 프로그램 계획수립 시, 관람, 탐방, 교류 체험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구성 ○ 코로나19 지속 등 오프라인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계획수립 필요
특별활동	○ 개회식 및 폐회식 ○ 주제에 맞는 캠페인 또는 퍼포먼스를 통해 자긍심 고취 및 국내외 활동 홍보 ○ 발표회 준비 및 발표, 수료 소감 발표 등 ○ 국가별,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등	○ 참가자가 캠프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고, 참가자 간 네트워킹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

- 온라인

- 강의중심형콘텐츠 : 세계시민교육, 재외동포이해교육, 한반도평화교육 등
- 인터랙티브콘텐츠, 스토리텔링형콘텐츠 : 성공한 재외동포 선배 스토리, 한민족공동체 성공사례 공유, 포스트코로나시대 세계한인대학생들의 역할 등
- 시뮬레이션형콘텐츠, 실감형콘텐츠 : UN지속가능발전목표, 한국의 역사와 문화체험, 대한민국 방방곡곡 지역소개 영상 등
- 메타버스 활용 프로그램 구성
- 오리엔테이션, 개,폐회식 등
- 대상별(국내, 재외동포) 차별화 콘텐츠 구성
- 3개 언어(한국어, 영어, 러시아어) 구성

※ 온라인연수 사이트 구축 완료 : <https://okfyouthcamp.com> 참고

나. 사업비 편성

○ 사업별 예산 배정 계획(안)

[단위 : 백만원]

오프라인연수	항공료	온라인	공공외교
1,070	380	390	500

※ 협력기관 매칭펀드 별도, '23년도 인원/예산 동일

- 지역별 참가자(해외) 선발 계획(안)

지 역	' 22 배정인원(명)	합계(%)
	1차/2차	
북미	35/35	70(17.5)
유럽	10/10	20(5)
아주·대양주	35/35	70(17.5)
아프리카·중동	10/10	20(5)
중남미	20/20	40(10)
러시아-CIS	50/50	100(25)
일본	5/5	10(2.5)
중국	35/35	70(17.5)
합 계	400	400(100)

※ 국내 대학생 1차/2차 각50명, 모집현황에 따라 변동가능

○ 유의사항

- 협력 기관의 매칭펀드(시행경비의 10% 내외) 제안액은 별도

4 협력기관 선정 방식

○ 입찰 참가 자격

-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
 - 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시점에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
 - 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운영 관련 인증실적 보유 기관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선정방식 : 일반 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

○ 결정방식

- 기술평가 점수 90%, 가격평가 점수 10% 적용
- 주요 평가항목

가. 기술평가(90%) : 평가를 위한 심사기준표는 <붙임4. 참고>

- ① 사업 수행능력 : 계획서 구성의 완성도, 참가자 관리체계 및 안전 사고대책, 관련사업 수행실적(정량평가)

※ 주요 평가내용

- 참가자들의 출신 국가(언어) 및 연령을 고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창의적인 프로그램의 편성·운영 계획
- 국제교류, 모국문화체험 등 직접 활동·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중점 편성, 참가자와 같은 연령대 또는 언어 지원이 되는 코디네이터 등의 배치 여부
- 정부·지자체·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서비스 가능 여부
- 청소년활동인증제 대응 업무 및 참가자 안전 관리 계획 포함 여부
- 코로나19 상황 지속시 대안의 적절성 여부

- ② 수행계획 충실도 : 시행기관의 창의적 시행운영 프로그램, 온라인, 오프라인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 ③ 운영조직 및 인적구성의 전문성, 적절성
- ④ 사업성과관리 및 사후관리 계획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계획의 적절성, 참가자 사후 관리 계획의 적절성
- ⑤ 협력기관 매칭펀드 및 지원계획

○ (정량평가)관련사업 수행 실적(5점) ※ 실적증명원 제출건만 인정

- 실적인정 범위(관련사업) :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대상 숙박형 캠프 등 행사

실적건수	46.8억 이상	32.76억 이상	18.72억 이상	18.72억 미만
점수	5	4.5	4	3.5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 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한다.
3.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붙임 5-1 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붙임 5-2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나. 가격 평가(10%):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참고

○ 선정절차

- 협력기관 입찰 공고 → 제안서 접수 → 협력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기술평가_제안기관별 PPT발표) → 가격평가 및 협상 → 선정 통보 및 계약체결

○ 계약체결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협상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76.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90%)와 가격평가점수(10%)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사업수행능력)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얻은 자(우선 협상 대상기관)부터 순차적으로 협상하며, 상위 순위기관과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기관과 추가협상은 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는 조정할 수 있음

○ 제안의 전제조건 및 제안서의 효력

- 본 용역의 범위는 제안요청서·제안서·계약서에 포함된 모든 내용으로 함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 및 상호 합의에 의해 수정·보완으로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재단의 요청 없이 변경·보완·삭제 할수 없음
- 제안서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 후에도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음
- 제안기관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기관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본 용역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은 제안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확보함
- 본 용역과 관련된 인허가 등 모든 행정업무는 제안기관이 수행함
-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본 제안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기관이 부담함
- 제안기관은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단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 하여서는 안 되며, 재단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 및 계약을 무효로 함
-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용역을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상 중 또는 계약 성립 후라도 행사취소 또는 행사일정, 행

사규모 등을 변경할 수 있다. (행사규모 변경 등에 따라 사업비가 증감될 수 있으며, 수정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 정부 또는 발주처 내의 불가항력적인 환경 변화로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발주처는 중단시점을 기준으로 실제 소요된 비용에 대한 사업비를 집행한다.

○ 심사결과발표 : 심사 종료후, 개별 통지 예정

5 입찰 신청서 접수

○ 마감일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출처 : 재외동포재단 경영관리부 이건호 대리

○ 사업 및 계약 담당자

○ 사업 담당자 : 김주동 과장(T: 064-786-0275, E-mail : joo@okf.or.kr)

○ 계약 담당자 : 이건호 대리(T: 064-786-0256, E-mail : gh@okf.or.kr)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중로 55 3층 경영관리부(우편번호 63565)

◆ 홈페이지 : <http://www.korean.net>

붙임 1. 협력기관 신청서 1부.

2. 제안서(세부시행계획서) 1부.

3. 프로그램 및 예산 집행 계획서(예시) 1부

4. 재외동포청소년교류사업 공모제안서 심사 기준표

5-1. 관련사업 수행실적

5-2. 사업실적 증명서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끝.

<붙임1>

2022-23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연수 협력기관 신청서

신청분야	☐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연수(OKFriends Homecoming/Cyber Youth Camp)		
기관명			
담당자	소속		
	직위(급)		성명
	연락처	(전화)	/(FAX)
		(휴대폰)	
		(이메일)	
2022-23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연수 협력 시행기관 신청서를 작성하며, 협력 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재외동포재단과의 협약을 통하여 재외동포재단이 정한 제반 사항 등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청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만약 <u>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는</u> 선정 취소 등 그에 상응하는 재단의 처분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2년 월 일 협력 운영 세부시행계획서 작성 책임자 소속 : 직위(급) : 성명 :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 2>

2022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연수 사업 운영 세부시행계획(예시)

1. 협력사업 운영 개요

- 협력기관소개
- 운영목적 및 취지
- 사업운영 기본계획, 방향, 특징, 사업자체 평가계획, 기대효과
- 연도별 추진계획
- 사업성과지표 및 사업평가관리 계획
- 재외동포 대상 자체 사업실적

2. 참가자 모집(홍보) 계획

3. 참가자 관리 지침 및 안전사고 대책

- 코로나19 지속시 대체계획
- 문제발생시 대응계획(온라인/오프라인 별도)

3. 사업운영 조직 및 인력지원시스템(통역 및 도우미 포함)

- 사업관리자(총괄PM), 온라인사업, 오프라인사업, 공공외교활동사업별 총괄 각 1명씩 지정, 기관소속 정규직원이어야함
- 업무별 인력투입계획(업무별 구체 인원수, 역할 명시 필요)

순번	담당업무	성명	부서 및 직위	전문성 (근무연수)	비고
					[필수 기재항목] 담당업무, 청소년활동경력, 자격증 현황

4. 공항 송·출영 및 사전입국자, 지연출국자 관리계획
5. 사업시설 및 숙박시설, 식사 운용계획
6. 예산집행계획(실행예산 자료 첨부)
7. 협력 사업기관 매칭펀드 및 지원계획
8. 협력사업 세부수행계획
 - 차세대한민족 자긍심 및 정체성 함양교육 : 한국어 및 역사, 문화이해교육, 한국문화이해를 위한 시설체험, 탐방 프로그램 등
 - 자랑스런 세계한인 핵심가치 증진교육 : 세계한인-세계시민 증진교육, 다문화-다양성-인권교육, 지속가능발전목표(SDGs)교육, 환경, 통일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토론, 발표회, 영상제 등 참여형 프로그램
 - 공공외교프로그램 : 국내 대학생 및 차세대 리더와의 교류, 청년 참여형 가치 공공외교활동, K-컬처청년 문화공공외교활동, 재외동포와 함께하는 글로벌캠페인 공공외교활동(해외파견) 등
9. 사업 프로그램 편성 및 세부일정 운영 계획
10. 참가자 만족도 설문조사서 작성
11. 기타

- ▶ 모든 사항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
- ▶ 위에 제시한 순서에 따라 작성하되, 세부내용은 각 기관의 특성에 맞게 창의적으로 기술
- ▶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사진 포함)
- ▶ 사업운영 세부예산집행계획 자세히 기술
- ▶ 용지여백

위 쪽	아래쪽	왼 쪽	오른쪽	머리말	꼬리말
15mm	15mm	24mm	24mm	10mm	10mm

<붙임 3>

2022 재외동포 대학생 모국연수사업
프로그램 및 예산 집행 계획(예시)

1. 오프라인 부문

○ 조직구성 및 역할

(총괄담당자, 오프라인연수 총괄, 공공외교활동 총괄, 지원인력 등)

2. 온라인 부문

○ 조직구성 및 역할

(온라인연수 총괄, 지원인력 등)

3. 세부 사항

○ 일자별 세부 사업계획 ‘오프라인 사업 예시’ (사업기간 8일)

일자	시간	프로그램	장소
1일차	15:00	등록	
	16:00	오리엔테이션	
	18:00	개회식	
2일차	09:00	세계시민교육	
3일차	09:00	공공외교교육	
4일차	09:00	토론 준비	
5일차	09:00	시티투어	
6일차	09:00	통일교육	
7일차	09:00	토론대회 발표회	
8일차	09:00	설문조사 및 해산	

○ 온라인 사업 계획 ‘예시’

구분	주제	강의운영방법			강의언어
		수업방법	평가방법	학습자료	
필수	공공외교	녹화영상	퀴즈	PPT	3개언어
선택	K-pop따라하기	실시간	X	영상	3개언어

○ 예산집행계획(오프라인사업, 예시)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내 역 (단가 * 일수 * 인원수)	비고
	재단	협력기관		
숙박비				
식비				
강연 및 체험비				
교통비 및 차량임차료				
통(번)역비				
자원봉사자 운영비				
여행자보험				
제잡비				
참가자 항공료				
사무국 운영비				
소 계				
총계				

<붙임 4>

재외동포청소년교류사업 공모제안서 심사 기준표

평가영역	평가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및 배점
정량평가 (5점)	차세대 사업부	관련사업 수행 실적 (5점)		외국인 및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 대상 연수 운영 실적(최근5년), 5점
정성평가 (85점)	내부/ 외부 위원	사업수행 능력 (30점)	안전성	안전사고 및 코로나 상황 지속시 대책, 10점
			계획서	계획서의 사업추진 목적 부합성, 10점
				계획서의 완성도 및 추진방법의 연계성, 10점
		수행계획 충실도 (30점)	프로그램 구성	강의프로그램(강사섭외 및 주제) 적절성, 10점
				체험, 교류, 기타 창의적 프로그램 적합성, 10점
				온라인 프로그램 구성의 다양성, 창의성, 10점
		운영조직 (10점)	운영조직 및 인적구성	운영인력의 전문성, 운영조직의 적절성, 10점
		사업관리 (10점)	성관관리 계획	성과관리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 5점
			사후관리 계획	참가자 사후관리 계획의 적절성, 5점
		매칭펀드 (5점)	매칭펀드 구성	전체 사업예산 대비 자부담 비율의 적절성, 5점
가격평가 (10점)	경영 관리부	예산편성(10점)		예산의 합리성 및 단가의 구체성, 적절성, 10점

<붙임 5-1>

관련사업 수행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주 1] 2019년부터 현재 수행중인 업무를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

2] 본 업무 관련사업 수행실적만 기재

<붙임 5-2>

사업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장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조달청 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이행기간)	단위	수량	금액	비고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2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FAX : - -)		
	발급부서 :		담 당 자 :			
註) ① 용역이행실적은 입찰 공고 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규모,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재외동포재단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로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써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하고 발주자에게 원본 1부를 제출한다.

2022년 월 일

(주) 0000 대 표 000 (인)

000 (주) 대 표 000 (인)

(주) 00000 대 표 000 (인)